	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	제 정 일	2023. 2. 1
		개 정 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장애학생지원센터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’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에게 차별 없이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 및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,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‘장애인복지법’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.

제 3조 (직무) 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2. 제4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
3. 교직원・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5.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
6.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사항

제 4조 (편의제공 등)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한다.

1.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
2.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
3. 취학편의 지원
4. 정보접근 지원
5. 편의시설 설치 지원
6.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지원

제 2 장 조 직

제 5조 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・감독하여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

제 6조 (직원)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

제 7조 (설치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8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,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9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
4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6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사항

제 10조 (심사청구 등)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’에 따른 교육 및 학습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2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 11조 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 12조 (개인별 교육지원계획) ① 센터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 13조 (장학금 지급) 장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 14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